

인천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나808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나8087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1246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총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변론 종결2022. 10. 25.

판결 선고2022. 11. 29.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1246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된 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2020. 6. 30. 접수 D로 마친,
 -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2020. 6. 30. 접수 E로 마친,
 -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2020. 6. 30. 접수 F로 마친
- 각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단에서 6행 마지막에 '(다만 제1, 2, 3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각 채권가액 1,000,000원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부분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4, 5행을 삭제하고, 제5쪽 제10~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는, 피고가 2018. 10.경 및 2018. 11.경 총 10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는데, C가 연간 100여대의 중고차를 취급하고,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각 채권가액 1,000,000원인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도 C의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제1, 2, 3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채권가액 1,000,000원인 저당권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C로부터 신용정보조회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선의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의 사해의사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인 2020. 6. 3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는 2019. 10.경 이후에는 C로부터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월 1,500,000원)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③ 이에 피고는 C에게 대여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나 중고차에 대한 압류를 하겠다고 하자, C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④ 원고는 2019. 4.경 C와 사이에 재고금융 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의 추가 약정서(갑 제4호증 제4쪽)에 의하면 원고는 개별대여 별로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000,000원인 저당권만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해의사가 그대로 있었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에지회

판사김은경

판사권비룡

별지